



돈보다 더 소중한 것?

오재호/한국부부문화 연구원장, KBS-2R "밥을 잊은 그대에게" MC

“아파트를 당신 이름으로 샀다고 당신이 이렇게 나오는 모양인데 천만에 만만에 콩 떡이다.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이라는 게 있다고!” 남자가 이렇게 나오자 여자 쪽에서도 할말이 있습니다. “흥! 재산분할 좋아하시네. 아파트 사는데 땅전 학평 도와준 적이라도 있었나? 이 날까지 평생을 백수건달로 살아온 주제에 입이 열 개라도 말못하겠네.” 이혼을 하기로 결정을 본 어느 40대 부부의 실화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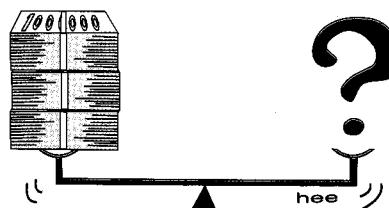
사실 이혼할 때 거론하게 되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터무니없는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무조건 반반씩 나눈다고 알고 있거나 또는 ‘내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으니까 재산분할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람피우다가 이혼 당하는 여자(남자)는 절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볼라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바람’과 ‘재산’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재산분할의 계산기준은 이렇습니다. 첫째, 배우자의 재산 정도를 따져봅니다. 둘째,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은 고통을 따집니다. 밀하자면 남편(아내)의 불륜 때문에 이혼하게 되었다면 당연히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셋째, 양 당사자의 학력과 경력과 연령과 건강 그리고 직업까지도 저울질합니다. 한쪽이 환자이거나 또는 생활능력이 의심스러울 때 혹은 아이들을 모두 떠맡을 때를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재혼의 가능성도 보게됩니다. 이 말은 경우에 따라서는 재산 분할을 노려서 이혼하려는 사



람들도 있다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두 사람의 혼인기간이 얼마나 되었나를 살핍니다.

몇 년 산 부부와 수십 년 산 부부와는 당연히 차이가 나야할 것입니다. 여섯째로 재산축적에 대한 부부의 협조와 공로 등을 따져서 결정합니다.

다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은 분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위자료란 혼인생활을 파국으로 몰아간 당사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부담하는 것입니다.

만일 혼인생활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면 위자료 따위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이혼소송에는

공탁금 없이도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처분신청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일반 민사사건과는 달리 가사 사건이기 때문에 공탁금이 없이도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에서 공탁금을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끝나면 고스란히 찾아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나라 여성들이 법에 대해 볼라도 너무 모르기 때문에 적어도 이혼재판에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위자료도 재산도 필요없으니 무조건 도장만 찍어라’는 식입니다.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나에게 주어진 권리만은 끝까지 지켜야만 합니다.

나는 자신의 권리와 포기하는 여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위자료만 해도 5천 만원은 받을 텐데 그렇게 많은 돈을 포기한단 말입니까? 만일 포기한다면 당신에게 돈보다 더 좋은 것이 따로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돈보다 더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게 궁금합니다.